20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안내

고용노동부는 [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] 사업을 통해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에게 2년간 최대 1,200만원을 지원하여 청년채용을 확대하고자 하는 바, 청년채용에 관심있는 기업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.

□ 사업안내

○ 사업명칭 :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

○ 주관기관 : 고용노동부

○ 신청기간 : 2024년 12월 31일 이내 /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

○ 신청방법 :

누리집 접속	
고용24	
(<u>www.work24.go.kr</u>)	

운영기관 선택
기업 소재지 관할
운영기관 선택

사업참여	
사업참여 신청	
(지원요건 충족 →	
승인 및 약정체결)	

○ 지원방법: 기업이 사업참여 신청 후,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경우 지원함. 단, 청년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신청한 경우 다른 지원요건 등을 충족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

○ 지워내용 :

-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*에서 취업애로청년**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**2년간 최대 1,200만원 지원**
 - * 지식서비스 · 문화콘텐츠 ·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
 - ** 만 15~34세의 **4개월 이상 실업자, 고등학교 졸업자,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** 가입기간 1년 미만 청년 등
- 최초 1년 月60만원×12개월 지급, 2년 근속 시 480만원 일시 지급
- 운영기관 : 기업 소재지 별 운영기관 운영

기업의 사업참여 조건, 취업애로청년 기준 등은 사업 누리집(www.work24.go.kr) 및 사업장 소재지 운영기관, 고용노동부 대표 문의(국번없이 1350)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.

붙임: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웹포스터

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웹포스터



(17) 지원대상

•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기업(사업주)

☞ 지원요건

• 중소기업(사업주)이 취업애로청년을 채용







근로시간 주 30시간 이상



최저임금 이상 지급 및 고용보험 가입

(11) 취업애로청년

• 실업기간 4개월 이상 / 대학교 졸업자 / 고등학교 졸업자

🖭 지원한도

• 사업참여 신청 직전 윌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% (비수도권 지역은 100%)

📵 지원내용

- 신규채용 청년 1인 당 윌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
-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지급으로

2년간 최대 1,200만원 지원

참여방법





문의

- 👊 사업장 소재지 운영기관
- 나업누리집(www.work24.go.kr)
- ☎ 국번없이 1350